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762

제안연월일 : 2019. 6.18.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재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7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7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에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주변 국공유지를 추가하고, 현수막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금하되 관혼상제,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운영을 허용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에 지하철역을 추가함(안 제9조제3항제1호가목)

○ 전통시장 주변 전자게시대 설치지역을 사유지에 한정한 단서를 삭제함(안 제9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 현수막의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토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철도역”을 “철도역·지하철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을 “이하의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 ---------- ----------.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 ---------- ----------.
가. <u>철도역</u>·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가. <u>철도역·지하철역</u>----------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u>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u>	나. ---------- ---------- ---------- <u>이하의 지역</u>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